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경 과

- 가. 발의자 : 이종호 의원 외 7인
- 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 / 2007년 12월 7일
- 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7년 12월 14일
 -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-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,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를 제64조로 변경함(안 제3조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함(안제9조)
- 나. 수당관련 미비점 보완
 -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(안 제10조)
 - 수당을 일비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별표2)

4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결산검사 소관부서 이관 및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붙임 :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